

1. 개정이유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「유턴 지원 전략 2.0」(‘24.5.8.)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·동반형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,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협력형·동반형 복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협력형 복귀기업의 완화된 축소기준 적용범위 확대(현행 제3조제1항 제2호가목1),2) 삭제)

1)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협력형 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만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완화하는 바,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2) 협력형 복귀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를 적용받는 요건 규정 중 둘 이상의 협력형 동반 요건을 삭제하여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협력형 기업인 경우 완화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함.

3)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.

나. 동반형 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(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)

1) 둘 이상의 기업이 복귀하는 동반 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

준을 일반 국내복귀시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음.

- 2) 동반형 복귀시 해외사업장을 현행 25%이상 축소하여야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‘축소’로 인정하던 것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10%이상 축소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.
- 3)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이 적어진 기업들이 국내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됨.

다.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을 위한 서류 규정(안 제11조)

- 1) 실제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규정하여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.
- 2)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이 실제 선정시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목적에 반영하지 못하여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못했던 바, 이를 현실화하여 제도 활성화.
- 3)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규정이 불완전하여 실제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, 규정 보완을 통해 협력형 복귀 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가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6조의2제1항”을 “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반형 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”로 하고, 같은 목 1) 및 2)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서류와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 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선정신청시 해당 기업 간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: 물품 공급 계약서, 서비스제공 계약서,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2. 선정신청시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: 양해각서, 수요기업과의 거래의향서,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거래실적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3.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
-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내사업장의 신설·증설 관련 [] 국내복귀계획서
 []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

구 분		국내복귀계획			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		
주요 생산제품등	사업장	사업자등록번호 (업태/업종)	주요 생산제품등(생산 제품등 명칭)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5단위)	사업자등록번호 (업태/업종)	주요 생산제품등(생산제 품등 명칭)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5단위)
	해외사업장						
	국내사업장						

구 분		국내복귀계획		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
신설·증설 계획	[] 건축물 신축	건축물 주소		
		건축면적		
		건축연면적		
		시공사명		
		신축기간		
		신축허가청(신고청)		
	[] 건축물 증축	건축물 주소		
		변경 전 건축면적		
		변경 후 건축면적		
		변경 전 건축연면적		
		변경 후 건축연면적		
		시공사명		
		증축기간		
		증축허가청(신고청)		
	[]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	건축물 주소		
		변경 전 용도		
		변경 후 용도		
		용도변경 전 면적		
		용도변경 후 면적		
		허가청(신고청)		

구분		국내복귀계획		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		
	[] 건축물 매입	매입건축물 주소				
		매입건축물 건축면적				
		매입건축물 건축연면적				
		매입가격				
		매도자 (주소 및 연락처)				
	[] 건축물 임차	임차건축물 주소				
		임차건축물 건축면적				
		임차건축물 건축연면적				
		임차가격				
		임차기간				
		임대자 (주소 및 연락처)				
	[] 기존 공장 내 제조시설 설치	기존공장 주소				
		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면적				
		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연면적				
		투자기간				
투자규모						

구분		국내복귀계획		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				
생산시설·설비 및 시험생산시설·설비 설치(임차) 계획	[] 생산시설·설비	시설·설비명	용도	시설·설비명	용도	구입처(임차처) 및 연락처	구입(임차) 가액	설치일(임차일)
	[] 시험생산 시설·설비	시설·설비명	용도	시설·설비명	용도	구입처(임차처) 및 연락처	구입(임차) 가액	설치일(임차일)

구분	국내복귀계획	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
기존 국내사업장 (기존 국내사업장 폐지인 경우만 기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명: • 사업장 업종: • 사업장 책임자: • 사업장 주소: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명: • 사업장 업종: • 사업장 책임자: • 사업장 주소: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을 폐지한(할 예정인) 경우 폐지일(폐지에정일): • 폐지의 형태: [] 매각, [] 양도, [] 시설물 폐기, [] 1년 이상 영업중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: • 폐지의 형태: [] 매각, [] 양도, [] 시설물 폐기, [] 1년 이상 영업중지
	• 매각액:	• 매각액:
	• 매각면적:	
	• 기존 사업장 부지총면적:	
	• 고용인원:	• 고용인원:
신설·증설 국내사업장 투자현황	• 사업장명:	• 사업장명:
	• 주소:	• 주소:
	• 총 투자액: (입지: , 설비:)	• 투자액: (입지: , 설비:)
	• 고용규모:	• 고용규모:

구분	국내복귀계획	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	
신설·증설 완료일	[] 신축·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	승인일	
		허가청명	
		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	
	[]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(신고확인 서) 발급일	허가서(신고 확인서) 발급일	
		발급청명	
		발급청 담당자 및 연 락처	
	[] 생산시설·설비 설 치완료 신고일	신고일	
		신고청명	
		신고청 담당자 및 연 락처	

(5쪽중 제4쪽)

	[]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체결일	계약체결일				
		계약상대자 (임차의 경우) 기간				
[] 생산시설·설비 또는 시험생산시설 ·설비 구매·임차 계약체결일		시설·설비명	계약체결일	시설·설비명	계약체결일	
선정일						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신설·증설 관련 []국내복귀계획서,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[]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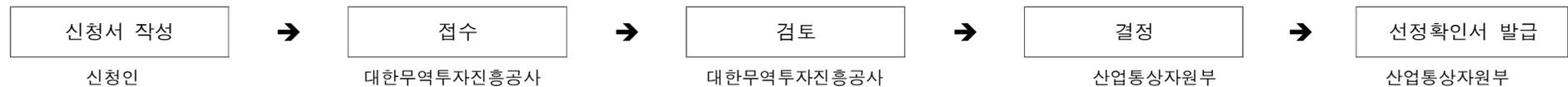
첨부서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국내사업장의 신설·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1. 국내 신설·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2. 건축물 신축, 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(신고)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(신고확인증) 3. 신축·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.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·설비 명세 5.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. 생산시설·설비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7.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[]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합니다.
2. ‘국내복귀계획서’ 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고 ‘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’ 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)</p> <p>①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가. <u>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:</u>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 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·서비스의 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“매출액등”이라 한다)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</p>	<p>제3조(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「<u>수도권정비계획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반형 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센트 이하일 것

1) 동일한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형 복귀기업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조에서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둘 이상일 것

2) 해당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것

나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조(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)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, 물품공급 계약서, 서비스제공 계약서,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

<삭 제>

<삭 제>
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) ①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서류와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<신 설>

②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선정신청시 해당 기업 간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: 물품 공급 계약서, 서비스제공 계약서,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선정신청시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: 양해각서, 수요기업과의 거래의향서,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거래실적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

질적으로 협력관계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